

## 당좌계좌 특약

### 1. 해 석

- 1.1 이 약관은 대한민국에서 개설된 계좌를 규율하는 현지약관으로 기본약관을 보충한다.
- 1.2 이 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는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약관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
- 1.3 이 약관이 기본약관에서 은행에 부여한 권리에 추가하여 은행에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한도 내에서 이 약관에서 추가로 부여된 그러한 권리는 이와 유사한 권리를 다루는 기본약관의 당해 규정을 보충하나 이에 우선되지 않는다.
- 1.4 고객이 달리 영문본이 우선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본약관과 한국의 현지약관의 한글본이 우선한다.

### 2. 보증금

- 2.1 당해 계좌를 개설하는 즉시 고객은 보증금(“보증금”)을 은행이 정하는 임시계좌에 입금하고 당해 계좌가 해지될 때까지 임시계좌에 보관한다.
- 2.2 당해계좌가 해지되는 즉시 은행은 고객이 은행 또는 다른 그룹 계열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증금 잔액을 반환한다.

### 3. 계좌 운영

계좌에 대하여 언제든지 출금되는 경우 그 계좌에 예치 또는 이체된 증서는 그 당좌대월금을 담보하는 담보로써 은행에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.

### 4. 상 계

4.1 기본약관 제4.1조는 준용되지 않으며 그 대신에 아래 제4.2조가 적용된다.

4.2 은행은 은행에 대한 고객의 지급채무를 고객에 대한 은행의 변제기가 도래한 지급채무와 지급장소, 취급지점(booking branch)과 지급통화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다.

### 5. 의무 이행

기본약관 제7.6조에 상반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에 대하여 대한민국 원화 또는 당해 계좌 표시 통화로 은행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.

### 6. 은행거래의 종료

6.1 기본약관 제9조에 따른 은행의 권리에 추가하여 은행은 당해 계좌의 잔액이 3개월 이상 영(0)인 경우 그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.

6.2 기본약관 제9.1조의 마지막 문장은 준용되지 않는다.

## 7. 책 입

기본약관의 제10조에 추가하여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손해 기재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- (가) 수표법 제38조 제5항에 기술된 손해를 포함하여 은행의 수표 처리로 발생한 손해
- (나) 은행이 통신상의 인감(또는 서명감)이 은행에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감)과 동일함을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확인한 후 거래를 행한 경우 또는 해당하는 경우 통신상의 비밀번호가 은행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확인한 후 거래를 행한 경우 인감(또는 서명감)의 위조, 변경, 도난 또는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 발생한 손해
- (다)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계좌 또는 은행이 등록카드 등의 증명서를 주의를 기울여 확인한 후 변경한 계좌와 관련하여 고객이 실명을 확인한 확인서 또는 증명서의 위조, 변경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고객이 부담한 손해

## 8. 이 자

이 계좌의 예금잔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붙지 아니한다.

## 9. 준거법 및 관할권

9.1 기본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.

9.2 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고객은 대한민국 법원의 비전속 관할권 및 기타 은행이 이 목적을 위하여 고객에 통지한 관할법원에 기속된다.